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민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948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7.

발 의 자:김민석·서영교·이건태

장경태 • 박홍배 • 박선원

김영호 · 안규백 · 황명선

김용민 · 김병주 · 진성준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공무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,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, 과실(過失)의 정도, 생계 상태,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받을 수 있음.

그러나 군인 등이 직무 중 전사·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, 「민법」 및 「국가배상법」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. 이에 따라 군인 등의 유족이나 가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음.

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 등이 전사·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유족과 가족 등에 대해서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2조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(戰死)·순직(殉職)한 군인·군무원·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과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의본인 또는 가족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유족의 위자료에 관한 적용례) ①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군인·군무원·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·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·순직하거나 「국가유공자 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본부심의회, 특별심의회 또는 지구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과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
제2조(배상책임) ①・② (생 릭	=) ;	제2조(배상책임) ①・② (현행과
		같음)
<u><신 설></u>		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
		전사(戰死)・순직(殉職)한 군인
		·군무원·경찰공무원 또는 예
		비군대원의 유족과 공상을 입
		은 군인 등의 본인 또는 가족
		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
		를 청구할 수 있다.